

인천지방법원 2024. 7. 3 선고 2023가단14512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6. 12.

판 결 선 고 2024. 7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50㎡를 인도하고,
나. 2024. 4. 18.부터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상훈

별지